

광주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62012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강

피고, 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 론 종 결 2021. 6. 17.

판 결 선 고 2021. 7. 8.

제1 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가단53630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판사 이선희